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배치·평가·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14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25.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인사제도평가담당관·인사운영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인사제도평가담당관·인사운영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인사제도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⑬ 인사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충원에 관한 사항

3. 외무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용·제청하는 재외 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의전행사담당관”을 “의전행사담당관, 의전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상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제9조제4항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양자방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양자방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⑥ 의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양자 정상외교 의전행사의 총괄
4.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제31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교타운의 유지 · 관리 및 방호

별표 1 중 총계 “962”를 “97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2”를 “733”으로 하며, 8등급 외무공무원 “68”을 “69”로,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20”로, 5등급 ·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3”을 “178”으로,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3”을 “35”으로,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16”을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1”을 “98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31”을 “742”로 하며, 8등급 외무공무원 “68”을 “69”로,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20”로, 5등급 ·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3”을 “178”으로,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0”을 “42”으로,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16”을 “17”

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전장 의전협력담당 관	4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 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 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	--	----------------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6년 7월 14일”을 “2028년 7월 14일”로, “2026년 7월 15일”을 “2028년 7월 15일”로 한다.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7월 14일”을 각각 “2028년 7월 14일”로, “2026년 7월 15일”을 각각 “2028년 7월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

정: 2026년 7월 14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

정: 2026년 7월 14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재외공관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 · 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u> 각 1명을 둔다.	⑥ ----- <u>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재외공관담당관 · 인사제도평가담당관 · 인사운영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 · 외교정보보안담당관</u> -----.
⑦ <u>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u> 및 <u>재외공관담당관</u> 은 <u>외무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u>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u> 및 <u>외교정보보안담당관</u> 은 <u>외무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u>비상안전담당관</u> 은 <u>임기제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⑦ ----- ----- ----- ----- --- <u>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인사제도평가담당관 · 인사운영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u> ----- ----- ----- -----.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u>인사제도평가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실장</u> 을 <u>보좌한다</u> .

<신 설>

1.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⑬ 인사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충원에 관한 사항

3. 외무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

⑫ ~ ⑮ (생략)

제9조(의전장) ① (생략)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생략)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신설>

1. (생략)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7. (생략)

라 외교부장관이 임용·제청하는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⑭ ~ ⑰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전행사담당관, 의전협력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정상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제>

<삭제>

3. -----
-- 양자방문-----

<삭제>

4.·5.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8. (생략)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4. (생략)

<신설>

같음)

6.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
-----.

1. -----
양자방문-----

2.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3.·4. (현행과 같음)

⑥ 의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양자 정상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4.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⑥ (생략) 제31조(기획부) ① ~ ⑤ (생략)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외교센터 시설 유지·관리</u>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u>2026년 7 월 14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 7월 15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 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1조(기획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7. (현행과 같음) 8. <u>외교타운의 유지·관리 및 방호</u>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 <u>2028년 7월 14일</u>----- <u>2028년 7월 15일</u> ----- ----- -----.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	---

④ 종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④

-- 2028년 7월 14일 --

-- 2028년 7월 15일 --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2의 정원 4명(행정주사·시설주 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 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 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4 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 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62</u>	<u>973</u>	+1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2</u>	<u>733</u>	+1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8</u>	<u>69</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8</u>	<u>20</u>	+2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73</u>	<u>178</u>	+5
영사직공무원			
·	·	·	
·	·	·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u>33</u> ·	<u>35</u> ·	+2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 ·	<u>16</u> · ·	<u>17</u> · ·	+1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71</u>	<u>982</u>	+1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31</u>	<u>742</u>	+1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8</u>	<u>69</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8</u>	<u>20</u>	+2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73</u>	<u>178</u>	+5
·	·	·	
·	·	·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40</u>	<u>42</u>	+2

·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 ·	· <u>16</u> · ·	· <u>17</u> · ·	+1
---	---	---	-----------